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18. 1. 9(화) 15:00~17:0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김상택(기획처장), 김혜린(동아리연합회 회장), 도재형(총무처장), 류한영(재무처장), 문지영(대학원 학생회장), 신혜슬(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안현주(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이공주복(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정한경(학부 총부학생회장), 차안나(학부 총학생회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불참자 (0명)			
안건	위원장 선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검토		
내용	<p>■ 개회</p> <p>재무처장은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다.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한 후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할 것을 제안하다.</p> <p>■ 회의내용</p> <p>1. 위원장 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위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교무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추천하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 - 학생위원은 위원장에게 중립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다. <p>2. 논의사항</p> <p>가. 운영 관련 사항 검토</p> <p>1) 참관인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이 기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형태는 학생들이 논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예산에 관련한 것들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참관인 허용을 요청하다. - 재무처장은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은 대표성을 가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학교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추후 합의된 사항을 공개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하다. 참관인 허용시 자유로운 논의와 원활한 회의가 어려울 것임을 말하다. 또한 등심위에서 논의되는 자료가 학교 내부적인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전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논의사항의 외부유출에 		

	<p>대해 우려를 표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참관인 허용 취지에 대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1년의 예산을 책정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다고 해도 참관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참관인 허용 시 등록금심의위원회들이 해당 회의에 대해 좀 더 무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다. - 재무처장은 참관인 관련 논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운영 사안 검토가 안건 중 하나이므로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다. 참관인 허용 문제는 회의를 방해하나 방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의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지의 척도라고 말하다. - 기획처장은 정보위원회에서도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음을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다른 곳에서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보통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민주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참관인 불허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다. - 재무처장은 참관인 허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우려를 표하다. - 위원장은 참관인 허용 문제를 논의하려면, 구성원 전체에게 참관인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하다. 단시일에 끝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다. 참관인 관련 논의를 회의록에 명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참관인 허용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 있냐고 묻다. - 위원장은 참관인 허용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검토를 크게 해야 한다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장기적으로 참관인 관련해서 차기, 차차기 등심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관인 관련해서는 오늘 언급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를 제안하다. 등심위 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p>2) 회의록 작성</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서기록 작성 허용을 요청하다. 서기록 작성은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학생위원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함에 따라 다시 서기록 작성허용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서기록을 작성할 수 되어 이는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근거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서기록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의 합의를 거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 학생처장은 회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자유롭게 토론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기록보다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2014년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쓰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서기록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회의록 작성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것이므로 학생위원회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을 공개하는 과정은 이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성자에 따라 회의록의 양상이 많이 바뀐다고 말하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정제되지 않은 서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다.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서기록을 통해 학생들이 모든 회의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2018년도 등심위는 운영방식에 관련한 합의사항이 있었음에도 학생위원회가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던 2014년도의 등심위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여야함을 요청하다. - 재무처장은 작년 5차 등심위 회의록부터 기존에 발언주체를 보직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의내용 전달을 위함이라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은 논의 과정중에 서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걱정되니, 심의가 모두 종결된 이후에 회의록과 서기록을 동시에 공개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안하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은 서기록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하며 서기록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다. - 외부전문가위원회가 서기록 공개 시 양측 입장 고수 및 대립이 심화되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다. 서기록은 공개하지 않되 회의록을 서기록과 같이 자세히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비전문가로서 회의록만 보고는 내용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서기록을 통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회의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다. 서기록으로 학생분들이 관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갈등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다. 합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염려에 유감을 표하며, 학생위원회들이 동등하게 합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하다. - 재무처장은 기존과 같이 회의록만 공개하되 보다 자세하고 꼼꼼한 수정을 거쳐서 논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논의의 취지가 분명히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서기록 공개 시 모든 위원들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 공개해야 할 것 인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사용한 용어를 서기록에서 속기록으로 정정하다. 학생위원회는 2014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사항과 같이 학생 측 별도의 서기 1명을 추천하여 서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중 중앙운영위원회 등 학생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2014년도 합의사항 중 ‘서기는 학교측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부터 전보다 자세히 기록하며 다음 회의부터 학생 측에서 추천한 서기 1명이 회의에 참관하여 서기록을 작성하고, 노트북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재논의 하는 것을 제안하다. - 모든 위원이 동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다. <p>•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록 작성에 관해서는 2014년도 등심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다. 회의록 작성시에는 논의된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논의 취지와 맥락이 잘 드러나도록 기록하기로 하다. <p>3) 자료제공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에서 제공한 등심위 관련 자료가 부족하며, 등심위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시하다. 학생위원회
--	--

	<p>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미리 검토하고 회의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을 잘 요청하기 위함임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이 요청한 예산안 관련 자료는 등심위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하기 때문에 장내에서는 공유할 수 있으나 회계자료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다. 또한 세부자료를 모두 제출하기에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자료를 주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다. - 위원장은 학생위원이 예산안 자료 요청시에 구체적 항목을 지정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향후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는 모든 등심위 위원들에게 고르게 공개 가능하며 공개 못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임을 덧붙이다. - 총부학생회장은 등심위 관련 주요 자료를 회의장에서만 볼 수 있어서 관련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다. 때문에 타 학교에서는 장내 제공 자료의 경우 회의 시작 전 회의실을 개방하여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회의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요청하다. 또한 자료를 미리 본다고 해도 학생위원들은 여전히 비전문가이므로 학생 측 외부 전문가 선임을 요청하다. - 위원장은 학생측 외부전문가 선임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다. 또한 자료제공방법에 대해 학생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미리 열람하는 시간을 주는 것과 등심위 자료 요청 시 세부항목으로 지정해서 요청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물어보다. - 총학생회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중운위와 논의 후에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할 것임으로 아직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다. 다만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일에 미리 자료 열람할 수 있을 것과 등심위 위원 외에 외부인에게도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다. - 위원장은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단 학생위원만 열람가능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는 위원만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다. - 모든 위원들이 등심위 위원들에 한하여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당일 오후 1시부터 회의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자료를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것은 학생 모두가 꾸준하게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다. 자료 제공 범위와 방식 등 학생들이 꾸준히 요구한 것들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시간관계상 2017학년도 추경예산 심의는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하다. - 총학생회장이 정리한 요구안을 전달하며 앞으로 예산을 심의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요구안들이 논의되고 수용되며, 해당 요구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p>3. 다음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 <p>■ 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2차 위원회를 1월 10일(수)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의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8년 1월 9일																																																
확인인	<table border="1"> <thead> <tr> <th>직위</th><th>성명</th><th>서명</th><th>직위</th><th>성명</th><th>서명</th></tr> </thead> <tbody> <tr> <td>위원장</td><td>이공주복</td><td>이공주복</td><td>위원</td><td>안현주</td><td>안현주</td></tr> <tr> <td>위원</td><td>김상택</td><td>김상택</td><td>위원</td><td>이상은</td><td>이상은</td></tr> <tr> <td>위원</td><td>김혜린</td><td>김혜린</td><td>위원</td><td>정한경</td><td>정한경</td></tr> <tr> <td>위원</td><td>도재형</td><td>도재형</td><td>위원</td><td>차안나</td><td>차안나</td></tr> <tr> <td>위원</td><td>류한영</td><td>류한영</td><td>위원</td><td>최성희</td><td>최성희</td></tr> <tr> <td>위원</td><td>문지영</td><td>문지영</td><td>위원</td><td>최혜련</td><td>최혜련</td></tr> <tr> <td>위원</td><td>신혜슬</td><td>신혜슬</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원	안현주	안현주	위원	김상택	김상택	위원	이상은	이상은	위원	김혜린	김혜린	위원	정한경	정한경	위원	도재형	도재형	위원	차안나	차안나	위원	류한영	류한영	위원	최성희	최성희	위원	문지영	문지영	위원	최혜련	최혜련	위원	신혜슬	신혜슬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원	안현주	안현주																																												
위원	김상택	김상택	위원	이상은	이상은																																												
위원	김혜린	김혜린	위원	정한경	정한경																																												
위원	도재형	도재형	위원	차안나	차안나																																												
위원	류한영	류한영	위원	최성희	최성희																																												
위원	문지영	문지영	위원	최혜련	최혜련																																												
위원	신혜슬	신혜슬																																															
작성자	예산팀 안예지 (150-112)																																																